

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(법 §76)



- **지급대상** :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
- **지급금액** :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
 -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하였고,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('15. 2. 8.)
⇒ **포상금 1억원**
 - 입후보예정자가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총 6,00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('15. 1. 20.)
⇒ **포상금 1억원(수령거부)**
 -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하여 “선거운동을 해달라”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('15. 2. 23.) ⇒ **포상금 5,000만원**

자수자에 대한 특례(법 §74)



매수 및 이해유도죄(§58)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(§59)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

50배 이하 과태료 부과(법 §68③)



- **부과대상** : 기부행위 금지·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(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 처벌)
- **부과금액** :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(상한액 3천만원)
- **과태료 면제(또는 감경)** :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·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

-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,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('15. 6. 10.)
⇒ **총 1,345만원(각 650만원, 695만원) 과태료 부과**
-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('15. 3. 11.)
⇒ **총 882만원(1명당 147만원) 과태료 부과**
-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~20만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은 조합원 32명('15. 3. 9.)
⇒ **총 9,450만원(1명당 150~600만원) 과태료 부과**



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.

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,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.

더 멀리보고, 더 부지런히 뛰는 선거관리위원회,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.

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. 여기에 자유, 공정, 화합이라는 참된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어 '아름다운 선거'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'아름다운 선거'는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.



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
국번없이 1390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2019. 3. 13. 실시
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



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·제한사항 안내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

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

○ 개요

- 선거일 : 2019. 3. 13.(수)
- 후보자 등록 : 2019. 2. 26.(화) ~ 27.(수)
- 선거운동기간 : 2019. 2. 28. ~ 3. 12.(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)
- 임기 : 4년(2019. 3. 21. ~ 2023. 3. 20.)

○ 선거운동

- 선거운동 가능자 : 후보자
- 선거운동 정의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- 선거운동 방법
 - 선거공보, 선거벽보
 - 정보통신망(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, 전자우편)
 - 전화[직접통화, 문자(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], 명함, 어깨띠·윗옷·소품
 -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(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)
 - ※ 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, 명함, 어깨띠·윗옷·소품 제외

-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, 선거운동 주체도 ‘후보자’로 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‘후보자’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.



조합장선거 금지·제한 행위

기부행위 금지·제한

① 주체별 제한내용(법 §35)

주체	제한기간	제한내용	비고
후보자와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 ※ ‘후보자’에는 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’을 포함함. (이하 이 표에서 같음)	기부행위 제한기간 (‘18. 9. 21. ~ ‘19. 3. 13.)	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,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※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	§35①
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	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	§35②
		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	§35③
		위 규정된 행위(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	§35④
조합장	재임 중	기부행위 금지	§35⑤

②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§33)

- 직무상의 행위 : 법 §33①1.
- 의례적 행위 : 법 §33①2.
- 구호·자선적 행위 :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

기타 금지·제한 행위

구분	금지·제한 사항	비고
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	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,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금전·물품·항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	§58
조합장 등의 축의·부의금품 제공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. •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. 	§36
조합의 임·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•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•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	§31
호별방문 등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, •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	§38
허위사실공표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당선목적)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. • (낙선목적)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. 	§61
후보자 등 비방죄	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. ※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.	§62